

감사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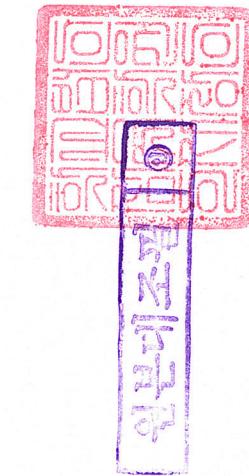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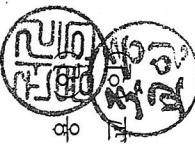
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 제 19조 제 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2013회 계년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·자금 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(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제무 제표는 사학기 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14년 4월 4일



내부감사 팀 기 용
조승

피감사자 (임회인)

직명 법인설장
성명 박세현